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정 2015. 2.9.

제1조 (목적)

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이하 “본 기준 및 절차”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하여 토포앤코코리아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본 기준 및 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을 말한다.

2.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산에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수수료(management fee)를 말한다.

4. “성과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서에 명시된 평가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약정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performance fee)를 말한다.

제4조 (수수료의 종류)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등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 관리수수료만 지급
2. 관리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

제5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계약자산의 특성, 규모, 운용방법 및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수수료는 운용자산과 회사와 투자자가 합의한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의 지급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 한다.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기한 등 수수료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자와 합의한 투자

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성과수수료 산정방식 등)

회사가 성과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2.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3.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5. 기준지표등
6.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7.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 (공시 및 통보)

회사가 본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 2. 9.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투자자문서비스 수수료 산정 및 지급방법

회사의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고객은 운용자산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회사와 투자자가 상호 합의한 투자자문계약서에서 결정합니다.

투자자문서비스 수수료 산정방법

수수료율	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
협의	자문자산규모 등에 따라 1.00% 내외의 범위에서 투자자와 협의하여 정함	운용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10% 내외의 범위에서 투자자와 협의하여 정함

투자자문서비스 수수료 지급방법

투자자문수수료의 지급은 분기별 혹은 투자자문계약서를 통하여 투자자와 합의한 방식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지 2] 투자일임서비스 수수료 산정 및 지급방법

회사의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고객은 운용자산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회사와 투자자가 상호 합의한 투자일임계약서에서 결정합니다.

투자일임서비스 수수료 산정방법

수수료율	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
협의	운용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1% 내외의 범위에서 투자자와 협의하여 정함	운용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10% 내외의 범위에서 투자자와 협의하여 정함

투자일임서비스 수수료 지급방법

투자일임서비스 수수료는 월별 혹은 투자일임계약서를 통하여 투자자와 합의한 방식으로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